태안군 공고 제2021-1736호

태안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태안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1년 11월 1일

태 안 군 수

1. 위원회 개요
   가. 근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나. 기능 : 군소음피해 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 모집인원 : 5명 이내
3. 모집 및 공고기간 : 2021. 11. 2. ~ 2021. 11. 12.
4. 임 기 : 2022. 1. 1. ~ 2023. 12. 31.(2년, 1회 연임 가능)
5. 자격요건
   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 소음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그 밖에 소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제출서류
   가. 태안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다. 자격을 증명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1부.

7.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1. 11. 2. ~ 2021. 11. 12.

나. 접 수 처 :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 041-670-2788)

다.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 주 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 이메일 : unidong81@korea.kr

8. 선정기준

가. 자격요건, 경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 선정

나. 지원제한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9. 기타 및 참고사항

가.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경우만 개별통보하며 별도의 절차없이 위촉 됨

나.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지급

다. 모든 서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가능

마. 태안군으로부터 위원선정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 041-670-2788)로 문의

붙임 1. 태안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신청서 및 작성요령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1부. 끝.